

서울중앙지방법원

속 기 록

사건번호	2015가합 579614
기 일	2016. 5. 16. 16:00
장 소	제460호 법정
속기내용	변론 녹취
총 면 수	14면
비 고	

민사소송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속기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6. 5. 23.

속기자 허 예 빈



0012-3

을 제3호증

재판장

2015가합579614 피고 전민준외7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측에 출석하신 분.

원고 대리인

케이씨엘에 서우성 변호사입니다.

재판장

김경완씨.

피고(1,2,5,6 선정당사자) 김경완

예.

재판장

피고1, 2, 5, 6 선정당사자. 그 다음에 피고3, 7 이홍식 변호사.

피고3, 7 대리인

예. 이홍식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재판장

그 다음에 피고4, 8 대리인.

피고 4, 8 대리인

예. 박희수 복대리인 출석했습니다.

- 1 -

001235

을 제3호증

재판장

저번에 피고1, 2, 5, 6, 4월 22일자 준비서면 그때 진술 안 했죠? 오늘 진술하는 것으로 합니다. 올라의 4호증의 1부터 20까지.

원고 본인 출석했습니까?

원고 대리인

준비서면을 냈습니다만, 신문사항을 지난 기일에 줄이기로 했는데 동일하게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가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판장

저번에 말 했지 않습니까? 신문사항은 낸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필요한 부분만으로 신문을 제한하겠다고 말했잖습니까.

원고 대리인

신문사항을 줄이라고...

재판장

줄여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왜 원고 소송대리인이 판단합니까?

원고 대리인

저희는 줄이는 것으로 해서 그것만 묻고, 그래야 저희가 반대신문이나 여러 가지 신문도 준비를 하고...

- 2 -

001105

을 제3호증

재판장

이미 저번에 이 사건을 원고 본인의 의사에 기해서 소송 제기한 것이나. 그리고 그를 위해서 원고 소송대리인한테 소송위임한 것이나. 이 부분과 그때 당시 조건부 증여할 때 가등기, 예약가등기 그 범위 안에 가족한테 가등기 한 것도 처분행위에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약정했느냐. 이 부분으로 한정해서 신문을 제한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리고 신문사항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얼마든지 신문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원고 소송대리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신문사항을 다시 조정하지 않으면 원고 본인을 데리고 올 수 없다.'라고 한 것이 말이 됩니까?

원고 대리인

저희는 지난 기일에 이해하기를 신문사항에 그렇게 불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 그것을 빼고 신문사항을 다시 제출하라는 것으로 이해했고, 그래야 당연히 저희도 소송지휘 관련해서는...

피고3, 7 대리인

메모했는데, 모용 부분과 수권 부분, 증인과 무슨 취지인가에 한정해서...

재판장

이렇게 행동하면 할수록 원고 본인의 뜻에 의한 소송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원고 대리인

저희가 본인 동영상도 냈는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을 제3호증

재판장

그것은 원고를 데리고 있는 사람 또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관리 하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내용의 동영상 만들 수가 있지요.

피고4, 8 대리인

기존의 의사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에서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게 동영상도 조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3, 7 대리인

동영상도 보면, 자른 것을 붙여서 편집된 것이 나타납니다. 저도 봤는데요.

원고 대리인

저희가 오늘도 동영상을 추가로 하나 더 냈고요. 내용 보시면...

재판장

동영상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다두고 있으니 결국 원고 본인 의사를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겠다는데 왜 그것을 원고 소송대리인이 막습니까.

원고 대리인

신문사항을 다시 내셨는데, 똑같은 것을 조금만 바꿔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신문사항을 정리해서 내신다고 이해했고요.



을 제3호증

재판장

신문사항은 피고 측에서 나름대로 낸 것이고, 거기에 기해서 신문을 어떻게 이끌고 제한할 것인가는 재판부에서 알아서 한다니깐요.

원고 대리인

신문사항 자체를 원래 두 가지로 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재판장

그러면 여기에 모시고 와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애초부터 신문사항을 보고는 아예 원고를...

원고 대리인

신문사항을 그 두 가지에 맞춰서 하기로 했고, 그러면 그것을 제한해서 제출해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면 맞는 것인데, 불필요한 내용을 신문사항에 다 포함시켜서...

피고3, 7 대리인

추측컨대, 원고는 아마 가장 간단한 것을 단답식으로...

재판장

지금 이 사건은 점점 원고 소송대리인이 그렇게 나오면 그것이 과연 원고 본인의 뜻인지, 아니면 원고를 모시고 있는 자녀분의 뜻인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 5 -



을 제3호증

원고 대리인

저희는 신문사항을 제한해주시면 얼마든 나와서 할 생각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재판장

제한한다고 제가 저번 기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문사항과 관계없이.

원고 대리인

다음에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신문사항을 다시 내시면서 똑같은 사항을 내셨기에, 그때 저희는 신문사항을 줄여서 다시 신문사항을 내신다고 이해했는데 다시 또 내신 신문사항이 조금만 달라져 있고 그러니 왜 이렇게 하시나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만약 제한해서 신문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고3, 7 대리인

변호사님, 그리고 저희가 모시고 있는 딸에 관한 것도 사항을 놓고 물어보려고 했다가 그 부분을 제한하고 빼기는 했는데...

재판장

재판진행사항을 녹취해달라고 원고가 계속 신청하고 있어요. 다 허가해줬는데, 과연 그 부분도 원고 본인의 뜻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원고 대리인

그것은 저희가 대리해서 제출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제출했습니다.

- 6 -



을 제3호증

피고3, 7 대리인

본인 뜻을 와서 확인하자니까요. 왜 자주 제한하십니까.

원고 대리인

불필요한 사항을 신문사항에...

재판장

왜 불필요하다는 것을 원고 소송대리인 본인이 알아서 주재하나요. 재판부에서 해야 될 일을 가지고.

피고3, 7 대리인

필요한지, 어떤지는 입증하는 저희 측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불필요한지 그것은...

재판장

신문사항에 관해서는 신청하는 것이고, 재판부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문하십시오.'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을 바꿔서 물어보십시오.' 또는 '묻지 마십시오.'라고 얼마든지 그것은 재판부에 맡겨진 사항인데, 왜 그것을 원고 소송대리인 본인이 판단하시냐고요.

원고 대리인

원고는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항에 한정해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피고3, 7 대리인

- 7 -

00:00:00

을 제3호증



입증하고자하는 저희들이 원래는 다 물어보는 것인데, 그나마 그것도 재판장님 이 쪽으로 한정하라고 해서 그렇게 물어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변호사님이 넣고, 빼고 하십니까?

원고 대리인

한정해주면 다음에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재판장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소송대리 제한문제까지 발생합니다. 재판하면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렇게까지 본인의 의사대로 소송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소송지휘에 관한 사항까지 왜 원고 소송대리인에게서 정리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사실상 형제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원고를 지금 모시고 있는 자녀분께서 그분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머니 이름을 앞세워서 이런 소송을 한다. 만약 사건 실체가 그런다면 결국은 형제들 간에 분쟁을 원고 소송대리인이 앞장서서 조장하고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꼴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고 대리인

그 말씀은 저희는...

재판장

그러니까 원고 본인을 모셔서 확인하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를 왜 본인이 알아서 미리 규정을 하시냐고요.

- 8 -



을 제3호증

당사자가 아니니 아무런 발언권 없습니다.

원고 대리인

기일 잡아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재판장

원고 본인의 거기에 기해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미리 일정한 의사를 가지고 사전에 주제를 안했으면 합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마치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고유의 권한사항까지 간섭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기일에도 재판부에서 얼마든지 신문사항을 한정해서 묻도록 하겠다고 말까지 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신문사항을 제출하는 것은 피고 측의 임의에 달린 문제이고 그것은 피고들의 자유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신문사항을 냈다고 해서 그 신문사항 내용 그대로 재판부가 신문하도록 그렇게 허락한다고 보장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필요한 신문이면 신문하도록 할 것이고, 불필요한 신문이면 신문을 제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원고 소송대리인께서 판단하시냐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해서 3번째 기일입니다.

원고 대리인

그리고 저희는 어떤 지휘의 관여라기보다 신문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던 부분은 애당초 신문사항에서 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피고가...

재판장

왜 그것을 신문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재판부에서 신문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을 제3호증

원고 대리인

내용 자체가 '전명신에 대해서 어찌구 저찌구' 이런 내용들이고, 그러면 아예 신문  
사항에서 빼면 될 부분을 넣어놓았으니...

재판장

있으면 필요 없는 부분은 재판부에서 신문에 반대해서 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데 왜 미리 원고 소송대리인에게서 재판부가 해야 될 일 또는 상대방 소송대리인들  
의 권한사항까지 다 임의로 사전규제를 하시냐고요.

원고 대리인

저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재판장

단순한 의견이 아니잖습니까. 신문사항이 지금 같은 신문사항이면 원고를 계속 못  
모시고 나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고 대리인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해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재판장

원고 소송대리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고 본인이 출석하는 것입니다.

원고 대리인

- 10 -



을 제3호증

본인이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

재판부의 고유권한인데 왜 원고 소송대리인에게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냐고요. 신문사항을 보고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신문하도록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빼십시오.' 또는 '바꿔 물으십시오.'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4, 8 대리인

재판장님, 이번에 변론기일이 두 번이나 공전됐는데 다음 기일에 혹시 원고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번에 종결해주시고, 만약 출석한다고 하면 한 기일 더 잡아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원고 측에서는 신문사항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재판장

지금 자체로 결심하면 각하예요. 소송수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소송에서도 만약에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예컨대 소송변호사님이 다른 사건에서 제출한 신문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왈가왈부할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원고 대리인

다음 신문기일을 잡아주시면 원고를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원고 대리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상당히 저는 그렇게...

- 11 -

00:00:00

을 제3호증

재판장

인격적 문제가 아니라 저번 기일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원고 대리인

제한을 확실히 해주면 원고 본인을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재판 진행을 해주십시오.  
오.

재판장

원고 본인이 출석했을 때도 예를 들면 재판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물어보십시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의를 하실 것 같아서 미리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고 대리인

질문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할 것입니다. 그때 제한하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장

재판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신문하라고 하는데도...

원고 대리인

이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기각하시고 진행하시라고 하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 12 -



을 제3호증

그래서 지금 미리 그 점에 대해서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고 대리인

신문사항이 아니라고 제한하신 사항에서 벗어난다면 저희는 이의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각하시면 기각하시는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재판장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신문사항이 무엇인가요. 신문사항은 피고들이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자유입니다.

원고 대리인

지난번에 제한하신다고...

재판장

그래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해석문제와 이 사건 제소 수권 문제하고 두 부분으로 신문사항을 제한한다고. 형제들 간의 문제. 지금 모시고 있는 자녀분과 원고와의 관계 또는 그분과 다른 피고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고...

원고 대리인

예. 그런 부분을 묻게 된다면 저희는 이의를 할 것이고, 재판부에서 결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고3, 7 대리인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형제 간의 문제는 물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변

- 13 -

○○○

을 제3호증

호사님이 피고 신문사형 자체를 제한하려고 하니 저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판장

6월 13일 오후 2시입니다.

피고4, 8 대리인

재판장님, 혹시 조금 더 늦은 시간으로 잡아주실 수 있습니까?

재판장

4시입니다. 재판 마칩니다.

- 14 -

001000

을 제3호증



### 서울중앙지방법원 녹 취 서

사건번호	2015가합 579614
기 일	2016. 6. 13. 16:00
장 소	제460호 법정
녹취내용	원고 본인 홍봉유의 증언
총 면 수	8면
비 고	

민사소송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녹취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6. 6. 13.

속기자 허 예 빈



을 제3호증



재판장

(법원보안관리대원에게)

옆에 있으면서 말을 대신 전하게 하다.

원고 본인에게

문 자식이 몇 남, 몇 녀인가요.

답 뭐라고 그러는지 귀도 안 들려. ...현재는 한 사람하고만 살아. 전명신하고 한 사람하고만 살아.

문 자식들 이름 아나요.

답 이름 아냐고? 전명신, 전영준, 전성준, 전성호...

문 오늘 여기 왜 나오신지 알고 있나요.

답 모든 것들이 내 등기에다 가등기를 해서 찾아달라고 나왔어요.

문 그것이 무슨 말인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답 모든 것들이 내 등기에다 가등기를 해서 찾아달라고 나왔어요.

(갑 제2호증의 1, 2, 3 제시)

문 이 서류들을 아시나요.

답 약정서, 흥봉유, ... 전명신, 영신. 흥봉유, 전영준, 전성준...

문 이 서류들을 아나요.

답 예.

문 이것은 언제 작성한 것인가요.

답 오래 됐어요.

문 이 문서는 자식들한테 부동산을 나눠준다는 내용의 문서 같아요. 맞습니까.

답 예.

문 이 문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늙으니까 스스로 한 거예요.

- 1 -

을 제3호증

문 그때 등기는 자식들한테 넘겨주되, 원고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는 임대료 등은 원고 즉, 할머니가 받기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답 나 살아 생전은 받을 건 받아야 하고 줄 건 줘야지.

문 그러니까 등기는 넘겨주되,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까지는 내가 계속 이 부동산에서 나온 임대료 등 수익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그런 약정서 맞나요.

답 등기는 내 마음대로 해야지, 아무나 넘겨주지 않아.

(갑 제20호증 사건위임계약서, 갑 제14호증 소송위임장 제시)

문 이 문서는 아는 문서인가요.

답 ...밖에 몰라. 나야. 소송위임장, 예.

문 본인이 쓴 것 맞나요.

답 예. 이것은 모르겠어. 몰라요, 몰라. 이것밖에 몰라.

문 이 소송위임장하고 위임계약서 이 서면이 무슨 내용의 서면인가요.

답 ...귀가 안 들려. 그만 말해.

재판장

(법정 방청석에 있는 소외 전명신에게)

가만 계세요. 계속 말씀하시면 퇴정시킵니다.

재판장

원고 본인에게

문 이것이 무슨 내용의 문서인지 설명해 보세요.

답 뭐 어떤 거라고?

(녹음속기록신청서 제시)

문 이것은 아는 문서인요.

답 안 보여. 녹음속기록신청서 그거밖에 못 읽어.  
 문 아시는 문서인가요.  
 답 예.  
 문 이 문서가 무슨 내용의 문서인가요.  
 답 몰라요. 내가 그런 것을 똑똑히 알면 빗하러...  
 문 서류 뒤에 이름과 주소 한번 써보세요.  
 답 이름은 적는데 주소는 내가 잘 못 적어. 이것밖에 못 써.

재판장

피고 측에서 맨 처음에 신청하신, 이홍식 변호사님이 먼저 신청하셨던가요?

피고4, 8 복대리인

제가 먼저 신청했습니다.

재판장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다 물어보았습니다. 더 물어볼 내용이 있습니까? 신문사항 중에서 어떤 것을 물어보시려고 합니까?

피고4, 8 복대리인

판사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소송위임과 관련된 사항 제외하고 계약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은 한도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재판장

신문사항 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을 제3호증

피고4, 8 복대리인

3번 목차에 증여계약의 해석 관련입니다. 계약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전명신과의 계약체결 여부에 관해서도 해지하였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타신문사항으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재판장

아까 원고가 '약정서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라고 물어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셨거든요.

피고4, 8 복대리인

저희가 준비서면에 기록한 것 중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토지를 영락교회에 기부한다고 그렇게 주장이 되어 있는데, 천주교 신자인 원고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의사에 기해서 과연 이것을 기부할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기타 신문사항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판장

신문사항 중에서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일단 말씀해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피고4, 8 복대리인

기타 신문사항으로 질문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부 의사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재판장

예.

피고4, 8 복대리인

원고 본인에게

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토지를 부동산 인근에 있는 영락교회에 기부하려고 한다고 주장이 되어 있는데, 과연 사실인가요.

답 자식들한테 받은 적 없어요. 영락교회 소리도 하지 마. 듣기도 싫어. 영락교는 무슨 얼어 죽을 영락교를...

문 원고는 천주교 신자이지요.

답 천주교 신자요.

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해서 취득하게 된 임대료를 직접 다 받고 있는가요.

답 안 들리니까 말하지 마.

피고3, 7 대리인

원고 본인에게

문 할머니, 사위하고 며느리들이 있지요.

답 사위하고 며느리 있어.

문 그러면 아까 자식들한테 땅 준다는 서류에 사위하고 며느리들은 이름을 안 썼지요.

답 이름 있는지 모르겠어.

원고 대리인

지금 귀도 잘 안 들리는데 답변 자체가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재판장

원고 본인에게

문 지금 이 사건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나요.

답 나는 뭇 하는지 잘 몰라요. 저기 우리 딸이 있으니까 물어봐요.

문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에 관한 분쟁인지 알고 있나요.

답 몰라요.

문 지금 돌려받고자 하는 것이 땅인가요.

답 예.

문 어디에 있는 땅인가요.

답 저기에 앉아있는 게 우리 딸이야.

문 어디에 있는 부동산인가요.

답 몰라. 다른 것은 들리지 않아.

피고(1, 2, 5, 6 선정당사자) 김경완

재판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한번 여쭙어보겠습니다.

재판장

한번 물어보세요.

피고(1, 2, 5, 6 선정당사자) 김경완

원고 본인에게

문 제가 누구이지요.

답 우리 사위.

문 이름이 무엇이지요.

답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재판장

원고 본인에게

문 무슨 서방인가요. 김 서방, 이 서방, 박 서방 있잖아요. 무슨 성씨인지 아는가요.

답 이씨. 이 서방.

피고3, 7 대리인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증여계약서를요, 할머니, 자식들한테...준다고 말하였잖아요.

재판장

그 내용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고 대리인

원고 본인에게

문 할머니, 소송 왜 하는지 아는가요.

답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딸은 저기 앉아 있고 아들 여기 앉아있는 것밖에 아무 것도 몰라.

문 저동집은 할머니 집이지요.

답 예. 맞아요.

문 소송 하는 것이 저동집을 찾으려고 하는 것 맞나요.

답 저동집을 찾고 할게 뭐 있어. ...우리집인데.

재판장

원고 본인에게

문 저동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 7 -

을 제3호증

답 문제 있는 것 그런 건 잘 몰라요.

원고 대리인

원고 본인에게

문 이 소송 왜 하는지 아는가요.

답 그런 것도 몰라요. 하여튼 여기 온 것만 알지.

재판장

원고 본인에게

문 이 사건, 지금 여기가 법원이고요, 어떤 사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할머니가 제기한 소송인 것 알고 있나요.

답 나더러 물어보는 것 답답하면 우리 딸이 저기 앉아있으니까, 나 데리고 온 사람이 저기 앉아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봐야 답답하실 거예요.

원고 대리인

원고 본인에게

(2016. 3. 21.자 소송위임장 아랫부분 제시)

문 할머니, 이것 할머니가 직접 쓴 것 맞나요.

답 예. 맞아요.